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6호)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3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2546호]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8. 5.
3. 회 부 일 : 2024. 8. 6.

[의안번호 제2204237호]

1. 제 안 자 : 오세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2546호]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의안번호 제2204237호]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Ⅲ. 검토의견

두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또한, 오세희의원안은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자체장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송재봉의원안	오세희의원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u> 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 ----- <u>대형마트</u> ----- ----- ----- ----- ----- ----- <u>명하여</u> <u>야 한다.</u> ----- -----

현행	송재봉의원안	오세희의원안
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 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 ----- ----- -----. ----- <u>--지정하여야 한다.</u>	③ ----- ----- ----- ----- -----. ----- <u>--지정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2회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장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

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¹⁾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9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모두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고 있음.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현황('24.10월)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점 (176개)			
		의무휴업 시행 (173개)			미시행 ¹⁾
		공휴일	평일	공휴일+평일 ²⁾	
합계	229	96	61	16	3 (울주·영암·연천)

주1) 준대규모점포만 출점하여 의무휴업 제도(지자체 선택사항)를 도입하지 아니함

주2) 월 2회 의무휴업 중 1회만 평일로 전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평일 포함 휴무 지자체(77곳)

서울 (3)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	경기 (18)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양주시, 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파주시, 동두천시, 하남시, 안산시, 가평군, 의정부시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강원 (4)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울산 (3)	중구, 남구, 북구	충북 (3)	청주시, 진천군, 충주시
전북 (1)	임실군	충남 (7)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경남 (1)	합천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경북 (11)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영주시, 김천시,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부산 (16)	동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해운대구, 영도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에 의할 경우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형마트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등 당초 의무휴업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없어짐에 따라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어려워지고, 대형마트등은 영업규제 도입 당시(365일 24시간)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오히려, 전국 77개 기초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이 상생을 위해 평일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또한 의무휴업 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유통 산업 환경 및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더이상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하며²⁾, 동 규제로 인해 소비후생 저하,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중소기업 및 농업민 등 대형마트 납품업자의 피해가 커졌으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는 2012년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협의를 거쳐 도입된 이후 10여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1

2) 중소유통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한지 10여년이 넘었으나, 중소유통보호 효과는 없고 온라인유통, 대형슈퍼마켓 등이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중소유통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의견임.